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12
----------	-----

제출년월일 : 2000. 2. 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99. 8. 9일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을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해당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4조).
- 나. 전국토의 폐기물투기금지지역화 및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함(안 제5조 제3항).
- 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 및 제10조)
- 라.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자의 보고 및 관계대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3조)
- 마. 매립장 반입대상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제한 량을 당초 1톤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4조 제2항 제2호).
- 바.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안 제25조의 2).
- 사. 법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함(안 별표 5)

3. 참고사항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99. 8. 9일 시행)
- 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관 67500-10489, '99. 6. 30)
- 다.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환관 67510-10644, '99. 8. 12)
- 라.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186호, '99. 3. 24)

4. 입법예고 : 1999년 12월 10일

5.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5호중 “오염시킬 수 있는”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으로 한다.

제7호중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중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수 있다.

제7조 제목중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제1항중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한자”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중 “폴리에틸렌”을 “생분괴성봉투”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목중 “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을 “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방법등”으로 하고, 제1항중 “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를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하고, 동항 제1호중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기물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5톤이하)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등의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이하 “기본지급액”이라 한다)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한다.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사업장배출시설계·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p> <p>3~4 (생략)</p> <p>5.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로서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한다.</p> <p>6. (생략)</p> <p>7.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생처리가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스티로폼등을 말한다.</p> <p>8. (생략) (신설)</p> <p>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생략)</p> <p>③생활폐기물중에서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은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p> <p>-----</p> <p>-----</p> <p>3~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u>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u></p> <p>-----</p> <p>6. (현행과 같음)</p> <p>7. “재활용가능폐기물” -----</p> <p>-----</p> <p>-----</p> <p>8. (현행과 같음)</p> <p>9.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p> <p>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재활용가능폐기물-----</p> <p>-----</p>

현행	개정안
<p>④ (생략)</p> <p>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u>재생처리가능폐기물</u>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성상별로 배출,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p> <p>⑥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신고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재활용가능폐기물</u> ----- ----- -----</p> <p>⑥ (삭제)</p>
<p>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② (생략)</p> <p>(신설)</p>	<p>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수 있다.</p>
<p>제7조(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p> <p>①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사업장폐기물중 동조제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한하여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p>	<p>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p> <p>① ----- -----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자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제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①법 제26조 제1항 내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p>	<p>제8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군수는 <u>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주민편의함양,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실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p>제10조 (삭제)</p>
<p>제11조(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생략)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포대는 합성수지로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옅은 노란색, 사업장은 옅은 청색, 공공용은 옅은 흰색으로 하고,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 	<p>제11조(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생분괴성봉투</u> ----- ----- -----
<p>제14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p> <p>③연탄재 및 재생처리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건설폐기물등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p>	<p>제14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 <u>재활용가능</u> -----</p> <p>④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3조(보고 및 관계대장의 확인)①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쓰레기종량제봉투·포대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u></p> <p>②군수는 <u>쓰레기봉투·포대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u></p> <p>제24조(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p> <p>①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4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u>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u> 2. 폐기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u>폐기물중 소량의(1톤이하) 건설폐기물·대형폐기물등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u> (신설) 	<p>제23조 (삭제)</p> <p>제24조(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방법등)</p> <p>①매립장 반입수수료 ----- ----- <u>생활폐기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생활폐기물</u> ----- <u>받은자가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경우</u> 2. <u>폐기물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5톤이하)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u> <p>제25조의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군수는 <u>폐기물을 불법투기등의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u> (이하 “기본지급액”이라 한다) 2. <u>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u>

(별표 5)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 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 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 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 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하 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 는 경우	300	500	700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 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 한다)	200	300	5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400	6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이상 1월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일이상 3월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적용범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다)(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보관량이 15톤(10m ³)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보관량이 15톤(10m ³)이상 75톤(50m ³)미만 인 경우	200	400	600
	(다)보관량이 75톤(50m ³)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5)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 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 우	100	200	300
	(6)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 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 한다)	200	300	500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 우	500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 우	400	600	800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 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	600	800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 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 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6호다목(2)(나)④ 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 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 제1항 또는 제 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 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 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 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 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 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 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 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 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 일내에 사후정산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 ³)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 ³)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300	5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300	5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300	5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7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 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 제1항)	300	5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 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	1,000	1,000	1,0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 게 작성한자(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 우	300	300	300
	(2)내용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 는 경우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 리신고를 한 자 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또는 제44조의 2)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 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 2 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 자(법 제25조의 2 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한 자(법 제25조의 9 제1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 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 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 나 매립한 자(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 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10	1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 지 아니하는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p>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 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 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 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p>	100	100	100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 항)	30	70	100
	1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 5 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 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 니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43조 제1 항)	30	50	100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	100	100